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3349
----------	------

제안연월일 : 2005. 11. 15.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4년 12월 3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200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4. 22~25), 제254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2005. 6. 15~21), 제256회 4차 위원회(2005. 11. 3)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2005년 11월 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및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시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高等教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教育基本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2호중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4條(學生의 選拔方法) ① ~ ③ (생 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第34條(學生의 選拔方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 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 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 시자격을 정지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 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 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